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38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김도읍·조지연·구자근

권영세 · 김형동 · 백종헌

장동혁 • 인요한 • 신동욱

정점식 · 유상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 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교육의 수준이나 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8항·제9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실시 기관"을 "교육의 내용,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교육비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지정, 지정취소의 방법 및 절차"로 한다.

-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 제81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41조제9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 ⑦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 ⑦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
	는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식품위
	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u>다.</u>
<u><신 설></u>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u>시·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지</u>
	정받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교육의 정지를 명하
	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u>다.</u>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실시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1의3. (생략)
<<u>신</u>설>

2. ~ 4. (생 략)

	<u>경우</u>	
	<u> </u>	11/
	육의 내용, 식품위생교육기관	게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亚
	육비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른
	지정, 지정취소의 방법 및 절기	<u>차</u>
H)	81조(청문)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41조제9항에 따른 식	<u> </u>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 4. (현행과 같음)